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21 -
소비자 선택권 보장, 국내 농업 경쟁력 확보 해법,
‘GMO완전표시제 도입’ 발표

- GMO 농산물 수입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표시제 미흡해 GMO 표시 식품 찾기 힘들어
- 식용유·당류·장류 등 국민 소비 많은 식품부터 GMO 완전표시제 도입, 국민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
- 국내 농수산물에는 GMO 생산·유통 금지... ‘GMO 표시제’가 수입 농산물과의 차별화 해법이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21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발표했다. 유전자변형 식품 취급이 늘어난 만큼, 국민 다(多)소비 식품부터 유전자변형 원료 포함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상위권의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수입국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수입한 농산물의 유전자변형 비중은 옥수수가 92.6%, 콩이 79%에 달한다. 즉, 수입농산물 중 대부분이 유전자변형 농산물인 셈이다.

그러나 표시제가 미흡하게 운영되어, 정작 소비자는 GMO가 원재료로 사용되었다고 표기된 식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가축 사료에 GMO 원료를 사용할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상당량의 유전자변형 식품이 취급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자신이 먹는 음식에 유전자변형 원료가 포함돼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유전자변형 DNA와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 대해서만 유전자변형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 농수산물은 유전자변형을 통한 생산·유통이 금지되고 있어, 수입 GMO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차별화가 쉽지 않은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식용유와 당류, 장류(간장, 고추장, 된장 등) 등 국내 소비가 많은 식품부터 유전자 변형 표시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국내에서 GMO 원료를 사용·판매하는 식품(옥수수 전분, 옥수수 기름, 옥수수 수프, 콩가루, 콩기름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음을 이유로 대부분 GMO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공약의 도입 배경으로 EU의 사례도 제시됐다. EU는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유전자변형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GMO 잔류(DNA 또는 외래단백질)와 상관없이 표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중국과 대만은 지정식품 표시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해 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 표시 조례를 제정해 인증 및 관리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며 “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표시제가 친환경 학교 급식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순기능을 설명했다.

덧붙여 GMO 완전표시제가 소비자 선택권 보장, 국내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추가설명자료

- 지난해 국내 수입된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총 1,197만톤, 26억달러 규모
- 해외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에 따르면, EU와 러시아 등은 GMO 잔류(DNA 또는 외래단백질)와 상관없이 모든 식품에 GMO 표시의무화(중국과 대만은 지정식품 표시의무화)

<참고1> 유전자변형식품(GMO)* 수입 승인 현황 (단위, 천톤, 천달러)

연도	전체		식품용		농업용	
	총계	총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20년	11,973	2,604,509	1,985	611,894	9,988	1,992,615

※자료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정확한 명칭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임

<참고2> 옥수수, 콩 수입 현황('20, GMO 수입 비중)

전체 옥수수 수입량	GMO옥수수 수입량(%)	전체 콩 수입량	GMO콩 수입량(%)
1,164만톤	1,078만톤(92.6%)	124만톤	98만톤(79%)

※자료 : 농림업주요통계('21, 농식품부)

<참고3> 해외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현황

구분	미국	호주·뉴질랜드	일본	대만	러시아	EU	한국
GMO 표시 기준	GMO 유전자가 남아 있는 식품	GMO 유전자가 남아 있는 식품	GMO 유전자가 남아 있는 식품	GMO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식품 (20종)	GMO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식품	GMO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식품	GMO 유전자가 남아 있는 식품
non GMO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표기 비의도적 혼입치 규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표기 비의도적 혼입치 5%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표기 비의도적 혼입치 3%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차원의 통일된 규정 없음. 비의도적 혼입치 0.9%이내 자율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표기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안됨

<참고4> GMO 완전표시제 입법 발의 현황 (식품위생법 개정안)

- 김승남의원 대표발의(20.9.7), 위성곤의원 대표발의(21.9.6)

□ Q&A 작성자료

GMO 완전표시제 도입 Q&A

Q1. GMO는 무엇이고, 유해한가요?

말 그대로 유전자변형생명체를 뜻합니다. 전통적인 육종 방식이 아니라 특정 DNA를 변형하여 자연에서는 불가능한 종과 종의 결합물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GMO입니다. 최근에는 동일한 종(예시, 감자+감자)의 DNA를 인위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으며 결합이 아니라 DNA 중 일부를 삭제(예시, 사과의 갈변 DNA 삭제)하는 GMO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GMO 위해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GMO가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는 주장과 학계의 연구가 GMO종자를 생산하는 몬산토 등 다국적 곡물 회사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태계 다양성을 해치는 것은 실제 사례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미승인 GM유채 등이 들어와 국가적으로 제거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일부 제거되지 않은 GM유채가 토착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GMO표시제 도입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내 식품용 GMO 수입량은 연간 200만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용 GMO는 GMO 표시제 면제 품목(최종 제품에 GMO 유전자 남지 않는)인 기름과 당류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어 일반 슈퍼나 마트 학교급식 등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고 판매되는 GMO 식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 알 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설문조사(2017~2020)에 따르면 약 80%의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최종 제품에 GMO 유전자가 남지 않는 경우에도 표기하는 GMO완전표시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Q3. 식품업계의 반대 이유는 무엇이고, 그럼에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식품업계에서는 비용 상승, 과학적 확인 불가능, 수입업체 역차별을 이유로 반대를 하

고 있습니다.

우선, non-GMO 농산물을 원재료로 식품을 생산할 경우 비용 상승이 야기되는데,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GMO 완전표시제 도입 이후 가격이 상승된 non-GMO 물품을 구입할 소비자 의사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과학적 확인 불가능하다는 주장, 즉 최종 제품에 DNA가 존재하지 않아 GMO 여부 확인 못 한다는 주장의 경우, 서류조사, 구분유통 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국내 인증 물품의 경우도 서류조사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 채소주스의 경우 최종 제품 DNA 검사를 통해 유기농 여부 확인은 못 하지만 서류 등을 통해 유기농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업체 역차별 주장은, GMO를 사용한 수입업체가 최종 제품에 DNA가 없는 것을 악용해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표기해 유통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내업체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입니다. 이 또한 서류조사, 구분유통을 강화하고, 거짓 표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진행해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종 제품에 DNA가 없는 대표적인 물품인 기름, 당류, 간장은 국내업체가 평균 95%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독점 구조이기 때문에 수입업체 역차별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4. 민간자율 non-GMO 표시제로 충분하지 않는가?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GMO 완전표시제는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약 200만 톤의 GMO에 대한 표시제로 GMO가 들어가 있으나 최종 제품에 DNA가 없어 표시 예외 식품인 기름, 당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에 GMO 표시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Non-GMO 표시제는 애초에 GMO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품에 대한 표시제로 GMO가 들어가 있는 약 200만 톤의 기름, 당류, 장류에 대한 표시제가 아니며 도입이 된다 해도 GMO가 사용된 약 200만 톤의 기름, 당류, 장류는 GMO 표시 의무가 없게 됩니다.

국내는 GMO 재배(사용화)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에 해당하는 약 200만톤의 GMO를 제외하고는 GMO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Non-GMO 표시제는 이미 GMO가 없는 제품에 GMO가 없다고 표시하는 중복 표시에 가까우며 약 200만톤의 GMO농산물이 사용된 식품에 표시를 하는 게 GMO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Non-GMO 표시제도 대부분 민간자율로 시행되고 있습니다.